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이 불공한 인사 운영,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
행안부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기업법」이
개정('22.7.12. 시행)됨에 따라 '윤리경영 저해 상황'의 세부내용을
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 위임사항인 불공정한 인사 운영,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
경우를 규정(안 제68조 제5항)

1) 지방공기업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*을 위반하여 채용비위·조세포탈·

회계부정·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

*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상법」, 「형법」, 「조세범 처벌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
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법률

2)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·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

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“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, 「상법」, 「형법」, 「조세범 처벌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, 조세포탈,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
2.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·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경영평가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8조(경영평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“ <u>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 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법, 「상법」, 「형법」, 「조세범 처벌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, 조세포탈,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. <u>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·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962